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책 임 운 영 기 관 의 설 치 ·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등 15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48명(5급 5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경위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과학관에 온라인과학관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함.

나. 국립과천과학관에 과학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약물범죄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함.

라. 국립중앙극장에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마. 국립공주병원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

바. 국립나주병원에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

사. 국립춘천병원에 강원권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

아. 국립부곡병원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과 입원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함.

자. 항공교통본부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환수와 피로관리제 도입에 따라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5명, 8급 4명)을 증원함.

차.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함.

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가속질량분석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함.

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파속채소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함.

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하. 국립기상과학원에 기상조절 기술 확보를 위한 구름물리실험챔버

(Cloud Physics Experimental Chamber)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거. 해양경찰정비창에 청사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과 제2정비창 신축에 필요한 감독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5. ~ 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4명”을 “8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0명”을 “8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6명”을 “45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5명”을 “9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공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30명”을 “13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3명”을 “18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7명”을 “12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3명”을 “18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교통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4명”을 “33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2명”을 “625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명칭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원(중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00명”을 “202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7명”을 “34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3명”을 “10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9명”을 “12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23명”을 “227명”으로 하며, 같은 표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해당 정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고, 정원 3명은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2. 국립기상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은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5